

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

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0 건)	0 원
(1) 일반회계는	0 건)	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
2. 예산전용(11 건)	536,526,000 원
(1) 일반회계는	11 건)	536,526,00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
3. 예산이체(31 건)	6,352,848,020 원
(1) 일반회계는	31 건)	6,352,848,02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 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